징계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선거시행세칙 개정(2019.11.25)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

작성 및 발신: 경제 C 반 17 학번 강동훈
수신: 제 38 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경유: 서혜지 제 38 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2019 년 11 월 25 일, 제 37 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제 29 차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 징계 당사자는 (이의제기 이전의) 첫 징계부터 변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세칙과 개정 세칙을 아래의 표에 정리하겠습니다.

개정 선거시행세칙 (2019.11.25) 제 32 조 일부
제 32 조(징계절차) *(제 1 항 생략)* ②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은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소명을 전달받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의 내용을 고려하여 즉시 징계해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징계 후 2 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4[1].] *(이하 생략)*

그러나 강동훈 당시 경제 C 반 학생회장 징계에 대한 그의 항의(별첨 1)에 대한 제 38 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별첨 2)에 따르면, 그 개정은 선거 실무에 과하게 비현실적인 부담을 주거나, 또는 그 개정만으로는 변론권을 어차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연역적[2]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징계 당사자의 변론권 보장 및 선거 실무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에 관하여 전반적인 의견 조회를 부탁드리고자 운영위원회에 기타 안건으로 발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공식적인 변론권의 보장은 최초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비민주적인 규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 나름의 현실적 고려 위에 유지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선관위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1] 원문 오타
[2] 연역 논증이란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을 의미하며, 전제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그 어떤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다. (출처: 이주한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 강의 내용)

〈경제 C/始반 학생회장님의 항의문에 대한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3]

이 입장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요구받기 때문에 최초 징계 때는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 고려 위에 유지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징계 회의에서부터 당사자에게 변론권을 부여하는 2019년 11월 25일의 개정은, 그 입장문에 따르면, 자칫하면 현실적 고려 없이 선관위에 과하게 비현실적인 부담을 안길 여지가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통상 2주일 내외이고, 변론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차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징계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회의, 당사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 현행 선거시행세칙은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최초 징계를 선관위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변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C/始반 학생회장님의 항의문에 대한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4]

이 입장문에 따르면, 변론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차례"의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시행세칙대로라면 (비록 당사자가 변론권을 가지지만, 소명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단 한 번의 회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11월 25일의 개정은, 그 입장문에 따르면, 변론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개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징계 절차와 변론권에 관하여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견 조회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의견 조회는 궁극적으로는 변론권에 관하지만, 이 의견 조회가 탄생하게 된 근간은 작년 선관위가 선거 사무에 관한 전문가이자, 실무자로서 낸 입장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변론권뿐만 아니라, 그 입장문에 관한 의견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의견 조회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질문을 포괄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징계 당사자에게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하게 비현실적인 부담을 얼마나 많이 선관위에 부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변론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관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변론권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필요되는 만큼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제 38 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경제 C/始반 학생회장님의 항의문에 대한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관악사회대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nucss/ (2020.01.09 확인)
[4] 제 38 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글

별첨 1: 강동훈 당시 경제 C 반 학생회장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그의 항의

[제 38 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항의합니다]

경제 C 반 학생회장 강동훈입니다. 선거 공지 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관위와의 마찰에서, 저는 선관위와의 조율을 통해 선거 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였습니다. 협조 결과, 선거 공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의 변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후보도, 선본원도 아닌, 한 과/반의 직선 대표를, 공고를 방해하여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항의합니다.

-

0. 들어가며

저는 올해 사회대 선거 관련 공지를 C 반에 직접 공지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선관위장님을 초대하여 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사무를 방해하여 C 반 학우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징계되었습니다.

-

공지하지 않겠다는 저의 독단적인 판단이 불러일으킨 물의에 대해 책임지고자, 저에 대한 재신임 익명 투표를 C 반 전체 카톡방에서 제가 자청하였습니다. C 반의 주권은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생회원에게 있고, 대표자의 판단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피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신임 투표 결과, 56.2%의 투표율과 81.0%의 재신임률로 재신임안이 가결되어, 남은 4 주의 임기 수행을 저는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레임덕 회장을 두고, 당선 당시의 찬성율에 버금가는 재신임률을 보여주신 C 반 학우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무한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

그리고 이 항의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해야 적절한지에 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2,769 명이 팔로우하는 사회대 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징계가 공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저 역시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항의해야만 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페이스북에 게시합니다. 우선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10 월 28 일: 강동훈, 한만희 선관위장님(현 사회대 부학생회장님)도 계신 운영위원회 톡방에 공지 거부 의사를 밝힘.

10 월 29 일: 강동훈과 한만희 선관위장님, 선관위원님을 초대하여 대신 공지하는 방안에 합의. 강동훈, 누구를 언제 초대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함.

10 월 30 일: 한만희 선관위장님, 본인을 초대하면 된다고 말씀하심.

10 월 31 일 13 시 58 분: 강동훈, 한만희 선관위장님을 C 반 공지방에 초대.

10 월 31 일 14 시 14 분: 한만희 선관위장님, 선거 일정을 강동훈 대신 공지.

10 월 31 일 19 시: 선관위 회의 개회, 선거 공지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강동훈 징계 결정

11 월 01 일 16 시 02 분: 한만희 선관위장님, 강동훈에게 갠톡으로 징계 통보.

11 월 01 일 16 시 04 분: 선관위, 사회대 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강동훈 징계 공고.

11 월 01 일 18 시 44 분: 한만희 선관위장님, C 반 공지방에 징계 공고.

-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사무를 방해하여 C 반 학우들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선관위의 징계에 대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이처럼 최소한의 변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징계 절차는 우리 진보의 요람 사회대 학생회에 걸맞지 않습니다. 둘째, 선거 공지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해된 정보 접근권은 없습니다. 셋째, 저는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선관위에 협조하였습니다.

-

1. 이러한 징계 절차는 우리 진보의 요람 사회대 학생회에 걸맞지 않습니다.

선관위 회의는 10 월 31 일 19 시에 개회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안건 목록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회의 현장 즉석에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즉, 저는 저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는 와중에, 제가 징계 당사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그 어떠한 변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광복 직후 매국노에게도 최소한의 변론권만큼은 부여되었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역시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나치 전쟁범죄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변론권만큼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저에게 변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로, 제가 자취방에서 한가로이 지뢰찾기를 하고 있을 때 저를 징계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당 회의가 개회된 지 21 시간 02 분이 지난 뒤에 저는 저의 징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는 결정된 즉시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21 시간이 지나서 통보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최소한 전화로라도 저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마땅합니다.

-

아울러 이 징계는 "시정권고"입니다. 저의 행위를 제가 시정하기를 바라는 진실된 선의에서 비롯하여 만약 저를 징계했다면, 제가 최대한 일찍 시정할 수 있게끔 징계 사실을 최대한 일찍 통보했어야 논리적 정합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징계 사실을 21 시간이 지난 뒤에 접했습니다. 저의 인지 범위 내에는 시정권고라는 물체도, 관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가 어찌 시정하겠사옵니까?

-

이 일련의 징계 절차와 타임라인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징계가 진보의 요람 사회대 학생회에 걸맞지 않는 절차적 부당함을 지녔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

2. 선거 공지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침해된 정보 접근권은 없습니다.

징계 회의가 개회되기 4 시간 전, 제가 톡방에 초대해드린 한만희 선관위장님께서는 C 반 공지방에서 선거 일정을 무탈히 공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선관위장님과 저 사이의 조율의 과정이 성공적이었을뿐만 아니라, 그 조율의 결과 역시 C 반 학우의 정보 접근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그러나 선관위장님께서 무탈히 공지를 공유하신 지 4 시간 이후에, 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저를 징계하는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해당 징계의 본질인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안건에 징계 논의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다룬

결과, 저는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저의 징계 사유가 공지 방해이기 때문에 해당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저는 항의하는 바입니다.

-

3. 저는 저의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직권을 남용하여 선관위에 협조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로 저를 징계하였습니다: 직권 남용과 선거사무 방해. 그리고 "해당 학생회원은 과/반 학생회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고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제 양심을 걸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협조하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C 반 학우분들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관위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즉, 저 대신 공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마치 저의 독단적 판단으로 공지를 거부했듯이) 저는 저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의 독단적 판단으로 선관위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

선관위장님과의 갠톡 내용 역시 제가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을 다소나마 드러냅니다. 선관위원이 대신 공지하는 방안을 선관위장님께서 제시해주시자, 저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그렇게 ㄱㄱ / 언제 초대하면 되는지, 누구를 초대하면 되는지, 그분 연락처 / 알려주면 바로 집행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것이 어찌 비협조적인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고의 진행을 거부"했다는 징계 사유와 "직권을 남용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고의 진행을 허용"했다는 문장이 똑같이 타당 내지는 부당하기 때문에, 해당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저는 항의하는 바입니다.

-

4. 저의 목적에 대한 섣부른 단정은, 감히 말씀 올리건대, 상당히 위험한 명제를 함축합니다.

징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단정이 써있습니다: "공고 진행의 거부는 학생회원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제한함을 통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섣부른 단정이 공식 징계 공고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보다 더 깊을 수 없는 참담함을 감히 느낍니다. 이미 여러 번 거듭하여 소명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16 개월 동안 헌신한 〈내일〉이 올해 홀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단일 후보라는 이유로 총학생회장 선거 공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사회대 선거 관련 공지는 딱 한 번 실수로 공유한 반면에, 총학생회장 선거 공지는 일체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 공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저의 소신에는 그 어떠한 당파성이나 당리당략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를 직접 공유하기를 거부한 저의 목적은 저의 논리적 정합성 유지의 소치일 뿐, 선거 결과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첫 총학생회장 선거 공지가 첫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 공지보다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 정합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오히려 "총학생회

선거 공지를 계속 거부하기 위하여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 공지도 일관적으로 거부하였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

그리고 "공고 진행의 거부는 (중략)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은 곧, "공고의 부재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고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를 상당히 위험한 명제를 함축합니다. 왜냐하면 f(0)≠f(1)라는 명제와 f(1)≠f(0)라는 명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공지하기를 거부하고, 선관위장님께서 대신 공지하실 수 있게끔 공지방에 초대해드렸습니다. 물론, 극소수설에 불과한 이 명제에 근거하여 "다른 과/반 학생회장들도 똑같이 공고를 거부해야 마땅하다"라고 제가 감히 다른 과/반의 직선 대표에게 권유하거나 강권하는 월권을 행사한 적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그러나 저와 선관위는 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만약 위의 전제에 동의하고 근거하여 저를 징계했다면, 공고 진행을 여태까지 성실히 이행한 여타 10 개 과/반의 무고한 학생회장님들께서도 역시 직권 남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셨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연역적으로 함축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찬가지로 그분들까지도 일괄적으로 징계해야만 선관위의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됩니다.

-

5. 저도 섣부른 단정을 감히 무릅써봅니다.

가정 1: 회장이 직접 공지하는 것이 선관위원이 대신 공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 경우, 선관위는 처음부터 선관위원이 대신 공지하는 차선보다는 제가 직접 공지하는 최선이 실현되도록, 저를 설득하거나 진작에 징계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지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선관위원이 대신 공지하는 방안은 어떻냐고 선관위장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따르면 선관위의 업무 순서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

가정 2: 회장이 직접 공지하는 것과 선관위장이 대신 공지하는 것 사이에 우열이 없다.

이 경우, 저를 징계함으로써 제가 직접 공지하게 만들더라도, 이미 선관위장님께서 똑같은 공지를 똑같은 공지방에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따르면 저를 징계한다고 하여 사랑하는 C 반 학우분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 따르면 제가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선관위의 징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

둘 중 어떤 가정을 택하든, 선관위가 여태까지 취한 행동은 모순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계를, 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선관위의 선의로만 오로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그리고 저도 섣부른 단정을 아래와 같이 한번 무릅써보는 바입니다. "공고 진행의 거부는 (중략)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섣부른 단정에 대하여 "본 징계는 C 반 학우의 정보 접근권 보호가 아니라 경제 회장 길들이기라는 목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섣부른 단정으로 감히 화답하여봅니다. 물론 이 섣부른 단정이 거짓이라고 입증될 경우, 저를 굳이 징계하지 않으시더라도, 입증 회의가 개회된 지 21 시간 01 분 이내로 시정하겠습니다.

-

6. 다시, 재신임 익명 투표 결과에 관하여:

비록 제가 독단적으로 내린 판단이 초래한 징계였음에도, 사랑하는 C 반 학우분들께서는 81.0%의 재신임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천한 학생회장에 대한 맹목적 애정 때문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차기 C 반 학생회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업무밖에 남지 않은, 4 주 후면 퇴임할 레임덕 회장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보다는, C 반 학우분들께서는 공지방에서 이 일련의 모순과 논리적 정합성의 부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산 증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81.0%, 이 4 음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부피의 재신임률이 얼마나 큰 질량을 지니는지, 그 밀도를 오차 없이 헤아려주시기를 앙망한다는 부탁을 감히 올립니다.

-

7. 나가며

앞에서는 대신 공지한다는 합의를 이루어 공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던 도중, 뒤에서는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징계한 뒤, 징계를 결정하고 약 20 시간이 지나서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이러한 행위를 대개 정치에서는 "협잡", 회사에서는 "사내 왕따", 그리고 군사학에서는 "화전양면전술"이라고 일컫는다고 저의 미천한 시사 상식에 저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

우리 선배 민주 열사께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피 흘려 세운 학생회의 징계 절차가 어찌 바로 그 군부독재 시절의 공안 재판보다도 더 비민주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 당당하게 민중의례를 거행하고 어찌 떳떳하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보의 요람 사회대 학생회가 어찌 과/반 직선 대표를 상대로 협잡, 왕따, 화전양면술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회대 학생회를 사랑하며, 사회대에 속하여 3 년째 학생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며 저는 시일야방성대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제 단과대를 사랑하는 본 징계 대상자는,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항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유시민, 1985)

-

2019 년 11 월 03 일

-

강 동 훈

-

제 38 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님 귀하

별첨 2: 강동훈의 항의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문

<경제 C/始반 학생회장님의 항의문에 대한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11 월 1 일 이루어진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다음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합니다.

공고 거부 행위에 대한 과/반 내 민주적 정당성이 아직 온전히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애초 시정을 권고한 선관위의 결정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외 시정권고의 결정에 제기해주신 의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징계규정에 따르면 최초 징계에 대해 변론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으며 부정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즉시 징계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선거운동본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변론권의 보장은 최초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비민주적인 규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 나름의 현실적 고려 위에 유지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에 선관위는 빠른 판단과 결정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통상 2 주일 내외이고, 변론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차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징계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회의, 당사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 현행 선거시행세칙은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최초 징계를 선관위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변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는 충분히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학생회원님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밝혀주신 공지 거부 사유를 우선 확인했고, 이는 이후에 밝혀주신 변론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과/반 내에서 공지 거부에 대한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했습니다. 주어진 역할 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2. 현재 선거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해된 정보 접근권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0 월 25 일 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공고는 6 일 뒤에야 선관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가 개시된 이후로 약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본부가 등록되었다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적극 개입이 없었다면 선거 종료까지 선거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직권남용과 선거사무의 방해에 대한 시정권고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고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반

내의 민주적 논의를 거친다. 둘째, 공고를 진행한다.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변화는 없었습니다. 선관위의 자체 공고는 약 일주일 간 선거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마련한 방안이었습니다. 해당 학생회원님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고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총학생회 선거 공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석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사회대 선관위는 사회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 대해 공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권자가 주체적 선택을 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선거 과정을 공고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제도적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이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 선관위는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이전에 우선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덮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거관리위원이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선전물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선거운동본부에 비공식적으로 귀띔한다면 해당 행위는 선거관리위원의 부정행위가 됩니다. 시정을 권고하는 행위는 최대한 '시정 권고'라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8 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